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승진심사 시기에 맞추어 근무성적평정과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하고,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전일까지 승진대상자명부를 수시로 조정하도록 하며, 승진대상자명부 조정 사유를 일부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」이 개정됨에 따라,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계산 기준일과 연 2회 실시하는 근무성적평정등의 시기를 변경하고, 경력평정과 동일하게 교육훈련성적평정 역시 재평정을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며,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및 조정 방법을 개선하는 한편,

「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」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1호 중 “전월 말일”을 “전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심사승진: 승진심사 실시일의 전일

제4조 중 “6월 30일과 12월 31일”을 “3월 31일과 9월 30일”로 한다.

제12조 중 “경력평정”을 “경력평정, 교육훈련성적평정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지휘역량교육성적은 「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」 제8조제3항에 따라 지휘역량교육과정”을 “소방정책관리자 교육성적, 관리역량교육성적은 「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」 제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정책관리자과정, 관리역량교육과정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전문교육성적”을 “전문교육훈련성적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「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규정」 제8조”를 “「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규정」 제7조”로, “전문교육”을 “전문교육훈련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「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규정」 제24조”를 “「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규정」 제31조”로 한다.

2. 소방령·소방경·소방위: 3점

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합철”을 “합쳐서 보관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영 제23조제3호”를 “영 제23조”로 한다.

제20조제2호 중 “승진임용제한사유”를 “승진임용제한사유 또는 영 제23조에 따른 승진심사대상 제외사유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경력평정”을 “경력평정 또는 교육훈련성적평정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퇴직자는 승진대상자 명부에서 삭제하고, 비고란에 퇴직일과 그 사유를 기재한다.

5. 승진임용자 또는 승진임용후보자로 확정된 자는 명부에서 삭제하고, 비고란에 승진임용일 또는 승진임용후보자 확정일과 그 사유를 기재한다.

제21조제8호 중 “청렴도평가·역량평가·다면평”을 “청렴도조사·역량평가·다면평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소방위 계급의 교육훈련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) 소방위 계급에 대한 교육훈련성적평정에 관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제1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계산)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근 무연수의 계산 기준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	제3조(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계산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
1. 시험승진: 제1차 시험일의 <u>전 월 말일</u>	1. ----- <u>전 일</u>
2. 심사승진: 승진심사를 실시하 는 달의 <u>전월 말일</u>	2. 심사승진: 승진심사 실시일의 <u>전일</u>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4조(근무성적평정등의 시기) 영 제7조 · 제9조 · 제10조에 따른 근무성적, 경력 및 교육훈련성 적의 평정은 연 2회 실시하되, 매년 <u>6월 30일과 12월 31일</u> 을 기준으로 한다.	제4조(근무성적평정등의 시기) -- ----- ----- ----- --- <u>3월 31일과 9월 30일</u> ----- -----.
제12조(재평정) <u>경력평정</u> 을 실시 한 후에 평정된 사실과 다른 사 실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재평 정하여야 한다.	제12조(재평정) <u>경력평정, 교육훈 련성적평정</u> ----- ----- -----.
제15조(교육훈련성적평정의 기준) ①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<u>지휘 역량교육성적</u> 은 「소방공무원	제15조(교육훈련성적평정의 기준) ①----- <u>소방정 책관리자교육성적, 관리역량교</u>

교육훈련규정」 제8조제3항에 따라 지휘역량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부여하는 다음의 평정점을 말한다.

1. (생략)

2. 소방령 및 소방경: 3점

②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성적은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부여하는 총 3점 이하의 평정점을 말한다.

1. 「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규정」 제8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 행하는 신임교육 및 전문교육 과정

2. 3. (생략)

③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훈련성적이라 함은 「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규정」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한 직장훈련의 성적 중 제4조에 따른 평정 기준일 이전 6개월간의 평정점을 말한다.

육성적은 「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」 제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정책관리자과정, 관리역량교육과정-----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소방령·소방경·소방위: 3점

②----- 전문교육훈련성적-----

--.

1. 「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규정」 제7조-----

----- 전문교육훈련 ---
--

2. 3. (현행과 같음)

③-----
----- 「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규정」 제31조-----

--.

④ ~ ⑥ (생략)	④ ~ ⑥ (현행과 같음)
제19조(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)	제19조(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)
① (생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승진대상자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승진제외자명부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승진대상자명부의 뒷면에 <u>합철</u>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승진제외자명부의 비고란에는 현 계급의 임용일자, 징계처분, 휴직 등 그 사유와 사유발생연월일을 붉은 글자로 기재하여야 한다.	②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합쳐서 보관</u> ----- --. ----- ----- ----- -----.
1. 2. (생략)	1. 2. (현행과 같음)
3. <u>영 제23조제3호</u> 에 따라 승진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	3. <u>영 제23조</u> ----- -----
③ ~ ⑧ (생략)	③ ~ ⑧ (현행과 같음)
제20조(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)	제20조(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) -
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은 승진대상자명부 조정일전까지 조정사유가 확인된 경우에 한하되, 다음 각호에 의하여 행한다.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영 제6조에 따른 <u>승진임용제</u>	2. ----- <u>승진임용제</u>

<u>한사유</u>에 해당하는 사람은 승진대상자명부에서 삭제하고, 승진제외자명부에 추가(비고란에 제외 사유를 붉은 글자로 기재)한다. 3. <u>경력평정</u>을 재평정한 경우에는 비고란에 정정사유를 붉은 글자로 기재한다. <신 설> <신 설> 제21조(승진심사자료) 승진심사는 다음 각호의 서류에 의하여야 한다. 1. ~ 7. (생략) 8. <u>청렴도평가·역량평가·다면평가 결과</u>(실시한 경우에 한정한다) 9. (생략)	<u>한사유 또는 영 제23조에 따른 승진심사대상 제외사유</u>----- ----- -----. 3. <u>경력평정 또는 교육훈련성적평정</u>----- -----. 4. 퇴직자는 승진대상자 명부에서 삭제하고, 비고란에 퇴직일과 그 사유를 기재한다. 5. 승진임용자 또는 승진임용후보자로 확정된 자는 명부에서 삭제하고, 비고란에 승진임용일 또는 승진임용후보자 확정일과 그 사유를 기재한다. 제21조(승진심사자료) ----- ----- -----. 1. ~ 7. (현행과 같음) 8. <u>청렴도조사·역량평가·다면평</u>----- ----- 9. (현행과 같음)
---	---